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165-10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CONTENTS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생계 지원	8
· 기부식품등 제공	8
·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8
· 양곡할인	8
· 영양플러스	8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9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9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9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9
· 차상위 자활근로	10
· 청소년 특별지원	10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0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학교우유급식	11
· 전기요금 할인	11
· 도시가스요금 경감	11
· 열요금 감면	11
· 미소금융	1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2
· 풍수해보험 사업	12
·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13
	25 04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4,	
Ī	
3 9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3
· 양육비 이행 확보	13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3
2. 의료 지원	14
2. 의료 시원	14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4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14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14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5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5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5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16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16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6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16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 예방·해소	16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17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17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CONTENTS

3	. 교육 지원	19
	· 국가장학금(I 유형)	19
	· 다자녀(세자녀 이상)장학금	19
	· 대학생 근로장학금	20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0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20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20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20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1
	· 파란사다리	21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21
	· 농업인자녀 장학금	21
4	. 주거·돌봄 지원	22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22
	· 농촌집 고쳐주기	22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22
	· 가사간병 방문 지원	22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22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3
	· 방과후 보육료 지원	2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3
	·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24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4
·장애인 활동지원	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
·지역아동센터 지원	25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	25
·초등돌봄교실	25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25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25
·아이돌봄 지원	26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26
	0.7
5.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27
· 치매공공후견지원	27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27
·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27
·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28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28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28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28
· 통합문화이용권	28
· 과학문화바우처	29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9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9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주택용 <mark>소방시</mark> 설 지원사업	30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30

CONTENTS



별도의 지원기준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1.	생계 지원	31
	긴급복지	31
	기초연금	31
	장애인연금	31
	근로장려세제(EITC)	32
	자녀장려세제(CTC)	32
	국민취업지원제도	32
	공공산림 가꾸기	33
	산림복지 일자리	3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33
	새희망홀씨	3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3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34
	새일여성인턴	35
	· 근로자햇살론	35
	· 햇살론15	35
	햇살론유스	35
	햇살론뱅크	36
	햇살론카드	36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3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36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2. 의료 지원	37
· 국가암검진	37
·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37
· 치매 검진 지원	37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7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38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38
3. 주거·돌봄 지원	39
· 국민임대주택 공급	39
· 기존주택 전세임대·융자	39
· 다가구 매입임대 출·융자(기존주택 매입임대)	
· 영구임대 주택공급	39
·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39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40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0
· 어촌생활 돌봄지원	40
· 가족희망드림 지원	40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40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1. 생계 지원 💣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기부식품등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식품 및 생활용품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 면·동에 확인	보건 복지부
아동 급식 지원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온라인(복지로) 신청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지방 이양)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농림 축산 식품부
영양플러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 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온라인(복지로)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 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 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 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수당 : (시설)월 6만원, (재가)월 4만원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경증장애인 월 3~11만원 	• 전국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재판정 장애심사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직권 장애심사의 경우) 모든 장애인 대상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검사비)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 지원 - 10만원 범위 내 지원 (진단서발급비 별도)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둘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시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	• 기저귀(월8만원)·조제분유 (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복지로)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차상위 자활근로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57만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생활(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건강(진찰·검사 등), 학업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 (기술습득 및 진로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 률상담비용 등), 활동(수련·문화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 신청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 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가능 	여성 가족부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서비스 연계(단,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차상위계층 대상	•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1523)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통신사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학교우유급식	• 국민기초생활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대 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 학기중(공휴일제외) 및 방학, 250일 내외 * 방학의 경우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 의미	• 학교별 신청 및 선정	농림 축산 식품부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 거나, 한전사이버 지점 포털사이트 (cyber.kepco. co.kr)통해 신청 * 한전고객센터(☎ 123)	산업 통상 자원부
도시가스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산업 통상 자원부
열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 수당,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 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 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산업 통상 자원부
미소금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 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서민금융통 합지원센터 (☎1397) 및 미소금융 재단· 지역법인	금융 위원회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연체 30일 이하)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6개월), 연체 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 (최장10년) (연체31~89일) 연체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분할상환 (최장10년) (연체 90일 이상) 이자전액감면, 원금감면(최대70%), 원금분 할상환(최장10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 원센터(☎1397)	금융 위원회
풍수해보험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포함)' 가입 시	● 풍수해보험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5%~, 차상위계층 77.5%~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지자체 및 민간 보험시를 통해 가입	행정 안전부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87세의 농업인 - 일반농가 -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 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 보험 보험료 지원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농가는 50%)	•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	농림 축산 식품부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 영세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일반어업인은 50%) 	• 지역 수협 회원 조합 및 영업점 으로 문의	해양 수산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5회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알뜰교통카드 전용 카드 및 앱을 통해 대중 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 지를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 추가 적립 가능 * 각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최대 500원 적립 가능 - 2천원·3천원: 최대 700원 적립 가능 - 3천원 이상: 최대 900원 적립 가능	● 알뜰교통카드 발급 후, 알뜰교 통카드 회원 가입 신청 *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국토 교통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 (23년)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등	•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신청 (1588-1519)	고용 노동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 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기간: 9개월(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양육비이행 관리원 (1644-6621)	여성 가족부
양육비 이행 확보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이혼·미혼 양육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서비스 등 지원	• 양육비이행 관리원 (1644-6621)	여성 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24 세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거주지 관할 지 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여성 가족부

2. 의료지원 🕞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 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안검진) 만60세 이상 노인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 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 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 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 전 수술비용 등 제외)	•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 복지부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실비 지원*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 시군구 보건소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이상) 가구는소득수준 무관 (질환기준) 미숙아-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일부질환 제외)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1년 이내 입원수술한 경우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최대 3백만원~10백만원 한도로 차등지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백만원 한도(미숙아와 선천 성이상아 질환 동반시 각각 한도를 합산)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최종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보건 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이상) 가구는소득수준 무관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외래 난청 선별검사 실시 신생아 및 확진 검사 실시 영유아 (보청기) 양측성 난청이면서 좋은 귀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3세(36개월) 미만 영유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 복지부
ㅉㅈ선천성대시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이상)가구는소득수준무관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실시 신생아, 확진검사 실시후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받은 영유아 (특수식이 등)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 받은 만19세 미만 환아 * 특수식이 등은 소득기준 무관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 검사비, 확진검사비 본인 부담금 지원(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선갑 성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소득기준) 저소득가정(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아동 (질환기준)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취학전 아동	• 눈 수술비(사전검사비 포함), 수술후 안경처방이 필요한 경우 안경비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수술전 사전 신청)	보건 복지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 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 상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 청소년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여성 가족부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500 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500개소)하되,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 (200명)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지자체 -〉환경 부로 지원대상자 추천)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및 취 약가구 밀집지역 내 취약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재래시장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	 취약계층: 쿨루프 등 폭염, 한파 대응 시공 취약지역: 폭염·한파쉼터 등 기후적응 인프라 설치 지원 	•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환경부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만9세~18세 청소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4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 학교에서 이용습 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 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관리 * 청소년전화 (☎ 1388)	여성 가족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기준: 기준세대의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50%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하는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받을 수 없는 사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 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하위 50% 대상자 지원은 21.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2년내 5대암 진단을 받거나, '21년 6월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연 최대 300만원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 보인부담금 구분 없이)까지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일부부 담금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 18세 미만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 미만	• 백혈병은 연 최대 3,000 만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1차 외래진료시 일부 지원 2,3차 외래진료시 및 1,2,3차 입원시 전액 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 대비 약제비 미지원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공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연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보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지원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리인 신청	질병 관리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 급자(주거·생계), 차상위본인부 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 이하인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 인부담경감대상자: 최대 40 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자: 최대 20만원	• 주소지 관할 보건 소에 신청	보건 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요양등급(1~5등급,인지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의료급여자 감경대상자 등	•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부담금의 40~80% 지원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국가 보훈처



3. 교육 지원 🔠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NHO.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국가장학금 (유형)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 은 성적기준 미적용)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350만 원 지원	홈페이지 (www.kosaf. 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 단, 미혼 자녀에 한함(연령무관)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 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인 첫째, 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520만원~450만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 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육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C학점 이상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620원, 교외근로의 경우 11,150원 (지원범위)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 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육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가정의 중2~고3 학년 학생 당연 지원 대상은 아니며 선발 될 경우 지원 (SOS장학)「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 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멘토링 캠프) 등 지속 지원 *장학금 매월 25~45만원 지원 ※ (SOS장학)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한 지원임을 고려 하여 10개월 한시 지원(예정)	● 소속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eduman. kosaf.go.kr)을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육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고2 ·고3) 50명 대상/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해외대학 진학자/연간 최대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총 1만 USD 이내)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 페이지 (www. 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육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만 35세 이하)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자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 인의 장애, 차상위계층 등	•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 상환(4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 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육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학부생) 기초·차상위 및 학 자금지원 8구간 이하 및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및 만 40세 이하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300만원) 저금리 대출 지원('22.2학기 현재 1.7%) *대학원생은 총 한도 있음 • 연간소득이 일정수준('22년 기준, 연2,394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 기초·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등록금·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한국장학재단 홈 페이지 (www. 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교육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교재비·재료비 (1인당 연간 35만원)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 kr)를 통해 신청 ※ 바우처 사용기 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 평생교육 바우처상담센터 (☎1600-3005)	교육부
파란사다리	• 소득 분위 5분위 이내의 학생 또는 장애학생, 탈북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 중 선발학기 재학생	(연수 내용) 언어 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교육 → 국가별 4~5주 간 해외 연수 →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 (지원 내용)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400만원 내외 * 파견 국가 별 물가수준 고려 차등지원 * 하등지원 * 학생 1 등 교육 기원 등 기원 등 기원 기원 등 기원 등 기원 등 기원 기본 등 기원 기본 기본 등 기원 기본 기본 기본 기원 기본 기본 기원 기본	• 권역별 사업 주 관대학('22년 11개교)에 문의 후 신청 * 권역별 주관대학 선정 현황은 한국장학재 단 홈페이지 (www.kosaf. go.kr) 참고	교육부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15만원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 bokjiro.go.kr) 을 통해 신청	교육부
농업인자녀 장학금	• 농업인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 자·차상위계층~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기준 충족 필요	•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만원~전액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지원 가능액 차등, 기초·차상 위계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I) 수령에 따른 등록금 잔액 범위 내에서 50, 100, 150, 200, 250, 300, 350만원 단위 또는 전액 지원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 rhof.or.kr)를 통해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114)	농림 축산 식품부

4. 주거·돌봄 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수선유지급여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	산업 통상 자원부
농촌집 고쳐주기	•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수리 지원 - 가구당 650만원 한도, 노 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 840만원까지 지원 등	• 거주지 관할 시· 군을 통해 신청	농림 축산 식품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주택도 시기금의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가구	• 기본금리 대비 1%p 금리 우대 * 금리는 보증금 및 소득 구간 별 상이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방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국토 교통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신체수발·건강·가사· 일상생활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 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 등)	• 거주지 관할 지 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혹은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인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 대상자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 ICT 장비 설치 지원	• 거주지 관할 서비스 수행기 관, 읍·면·동 주 민센터에서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보건 복지부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만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 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 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 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 원금 차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언어발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 (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전액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일부 본인부담 (40%) (휴식지원프로그램)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 거주지 관할 지 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호홉·지적·자폐성· 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36개 품목 무료교부 (지원기준액 내) - (지체·뇌병변·심장)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안전손잡이, 휠체어용 보행기, 피더시트,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등 27품목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 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 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6품목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3품목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 급여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 제공 * 차상위 활동지원급여(본인부 담금: 정액(20천원), 특별지 원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정의 해당 서비스별 욕구기준에 충족하는 자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상이)	•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서비 스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지역아동센터 지원	•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 (기초수급자, 차상 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 가구의 아동 등) 배정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 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 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에 신청	보건 복지부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 0세~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 모가정 등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상담실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통합서비스 지원 건강(치과)검진, 예방접종, 언어치료, 기초학습, 체험활동,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교육, 방역서비스, 가족 상담 및 치료 등 제공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초등돌봄 교실	•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간식 무상 제공	● 학교별 돌봄교실 신청	교육부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 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 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 등	• 노후복지업무근로자가 재가 서비스 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 활동 및 식사수발·체위 변경 등 활동 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 름·말벗 등 지원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에 신청	국가 보훈처
취약농가 인 력 지원(행복 나눔이)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 중위 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 나눔이 활동비 지원 1일 1만 9,000원, 연간 최대 12일 	•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농림 축산 식품부

사	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돌봄 원	 맞벌이, 취업한부모, 부모의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 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지원 	• 시간제 돌봄(연 960시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월 60~200시간)만 2세 이하 아동 대상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제공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 bokjiro.go.kr) 을 통해 신청 * 온라인신청은 직 장건강보험 가입 자만 가능	여성 가족부
방과	소년 후 활동 원	•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직업 교육, 보충학습지원, 급식, 상담, 캠프 등	• (초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및 유선신청 (중등) 방문 및 유 선신청 * 정부24 온종일돌 봄원스톱서비스 (www.gov.kr) 에서 신청 ** 방과후아카데 미 홈페이지에 서 지역별 운영 기관 확인 가능 (www.youth. go.kr/yaca)	여성 가족부





5.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0. 군와'입물 등 기다 시면 식민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치매공공후견 지원	• 치매환자로서 가족이 없는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시군구 치매안심 센터에 신청	보건 복지부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TV수신료 면제자), 시청각장애인 중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가구 (농어촌 지역의 만65세 이상 우선지원)	•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 신청자가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 (124 콜센터)로 전화 신청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직업계고 졸업자 등의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세부조건 : 매년 5월중 고시	● 현역 배정인원 일정 범위내 경제적 약자 우선순위 배정 * 지정업체에서 인원 배정 신청 (매년 6월) → 병무청에서 지정 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	• 지정업체에서 추천권자에게 배정신청	병무청	
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력 제한 완화 (고졸이하 →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 * 단,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 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민원 안내-'경제적 배 려대상자 지원대 상 여부 확인신 청'에서 접수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병무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복무 중 겸직허가	• 복무기관에 겸직 허가신청서 및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	병무청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 (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 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 단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신청 (위치 문의 및 전 화상담: 국번없이 132번)	법무부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	•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 금, 상속·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등	• 전국 65개 배치 기관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으로 전화예약 (평일 10시~17 시) 또는 법률홈 닥터 홈페이지에 서 상담예약	법무부
통합문화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 개인(카드1매) 당 연간 11만 원	• 읍·면·동 주민 센터 및 문화 누리카드누리집 (www.mnuri. kr)또는 모바일 앱([공식]문화누 리카드)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화 체육 관광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과학문화 바우처	• 6세 이상('17.12.31. 이전 출생자)의 신청자격을 갖춘 개인 및 법정복지기관 -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장애인(경증), 도서벽지학교 학 생 등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 (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법인, 드림스타트,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센터 등 국가적 복지사업 운영기관	• 과학공연, 전시·체험, 도서, 교구, 강연·교육 등 과학문 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바우처 발행 ※ ('23년) 1인당 5만 원 (연 30,000명)	• 과학문화바우 처 온라인 포털 (scivoucher. kofac.re.kr)을 통해 신청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등록 시각·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보훈처)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선정 후 보급)	● 시청자미디어 재단 또는 홈페 이지(tv.kcmf. or.kr)를 통해 신청 * 상담전화 (☎ 1688-4596)	방송 통신 위원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실물 선불카드 발급(1인당 10 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 (www. forestcard. or.kr) 또는 우 편신청 (주소: 대전광역시 중 구 중앙로149, 10층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모바일 신청(개 인) 가능	산림청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스포츠강좌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 만 5~18세 유·청소년 - (1순위) 신규 및 동 사업 30개 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 급자 - (2순위) 신규 및 동 사업 30개 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4순위)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월 9.5만원 범위 내 12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시·군·구 주민센 터 및 스포츠강 좌이용권 포털 사 이트 (svoucher. ksp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체육진흥 공단 (☎ 02-410- 1298~9)	문화 체육 관광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당 소화기, 화재경보기	거주지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청	소방청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5·18민주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 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청년창업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25%인 자	• 지재권 상담, 지재권 출원 서류작성, 지재권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재권 침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 지원 등	• 공익변리사 특 허상담센터 방 문 또는 전화 (☎02-6006- 4300), 홈페이 지(www.pcc. or.kr)	특허청

별도의 지원기준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1. 생계 지원 💣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중한질병 등) 가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대도시 241백만원, 중소 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 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금융재산(600 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4인가족 월간 종류별 지원액〉 종류 생계 주거 복지 의료 지원액 162만 66.2만 149만 300만 (1회) * 가구원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 상이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관할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자 또는 129보건복 지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요청 또는 신고	보건 복지부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 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	• 매월 최대 단독가구 321,950원, 부부2인 가구 515,120원 지급 (연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국단위 신청 가능 - 지자체(읍·면·동)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 go.kr)	보건 복지부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23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 하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 자인 경우 등은 제외	월 최대 40.2만원 지급(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소득보전급여로서 월최대32.2만원 지급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40.2만원 지급	● 전국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근로 장려세제 (EITC)	• 가구 구성별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으로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별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 정기신청 (5.1.~5.31.), 기한후 신청 (6.1.~11.30.) 기간에 ARS (1544-9944), 손택스(모바일홈 택스), 인터넷 홈 택스 (www. hometax.go.kr),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
자녀 장려세제 (CTC)	• 전년도 12.31.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연간 총소득기준 4,0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인 경우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 정기신청 (5.1.~5.31.), 기한후 신청기 간 (6.1.~11.30.) 에 ARS(1544~ 9944), 손택스 (모바일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 go.kr), 전국 세무 서 방문 신청	국세청
국민취업지 원제도	(1유형) 15~69세 저소득층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4억 이하 - 단, 청년층(18~34세 이하)은 가 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 재산 5억 이하 (2유형) 1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및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공통) 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 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6개 월간 지원 *미성년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2유형) 훈련참여시 최대 6개 월 동안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원 지원 등	• 온라인 (www.kua. 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 노동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공공산림 가꾸기	만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참여제한 : 최대 3년간 2년이상 참여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자	•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7만 6,960원~ 8만 4,28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근무시간: 160시간, 근무기간: 약 10개월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 넷을 통한 신청 등	산림청
산림복지 일자리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 취약계층의 선발 우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임금지원 주40시간 근무, 10개월 단기 고용, 월180만원 가량 임금 지급(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급여는 달라질 수 있음)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 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일모 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산림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 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 만원 한도로 지급	● 읍·면·동 주민센 터를 통해 신청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 을 별도 공고	국토 교통부
새희망홀씨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의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	• 생계자금을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대출	• 전국 14개 은행에 신청	금융 위원회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의 60%)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임대보증금(10천만원 한 도로 고정금리 연2%, 최대 지원기간 6년 (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전국 17개 지회로 문의 (우편방문접수가능)	중소 벤처 기업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만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 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만18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 비(월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모 · 부의 만5세 이하 자녀, 월5만원 - 만 25~34세 이하 청년한 부모의 만 5세이하 자녀, 월 10만원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 모의 만 6~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 중고생 학용품비(연 9.3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월 5만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www.bokjiro. go.kr)을 통해 신청	여성 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만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아동양육비(월35만원), 자립지 원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www.bokjiro. go.kr)을 통해 신청	여성 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서 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상담, 출산·양육지원, 멘토링, 자조 모임,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 사업수행기관 (☎1644-6621, 가족상담전화)	여성 가족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새일 여성인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경력단절여성등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 우선 연계	•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 ·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가까운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방문· 상담 (☎1544-1199) *홈페이지 (saeil.mogef. go.kr)	여성 가족부
근로자 햇살론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 : 2,000만원 내 사업자 햇살론 : 운영자금 2천 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 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서민금융회사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 점 및 협약 보험 사에 신청	금융 위원회
햇살론15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 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급리 15.9%, 한도 2,000만원 내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 할상환 표준화된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과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 신청 가능 성실상환 시 우대금리 (1년마다1.5%p~3%p, 최대 6%p까지 우대) 적용 가능 	● 전국 14개 은행 지점, 카카오뱅크 및 7개 은행 모바 일 앱(신한, 우리, 기업, 하나, 전북, 부산, 광주)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 융진흥원 App	금융 위원회
햇살론유스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만 34세이하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한도: 1,200만원내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금리: 3.6~4.5%(보증료 0.1~1% 포함) 	 (보증신청) 서민 금융진흥원 App (대출신청) 협 약 은행 창구 및 APP 	금융 위원회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햇살론뱅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 용평점 하위20% 이하인 자 	• 한도: 2,500만원 내 • 금리: 4.9~8%대(보증료 1~2% 포함)	• 협약은행의 창구 또는 App	금융 위원회
햇살론카드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 또는 NICE 기준) 신용카드 미보유자 대상 	• 한도: 200만원 내	• (보증신청) 서민 금융진흥원 App • (카드신청) 협약 카드사 신청채널	금융 위원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 자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 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사람	 금리 15.9%, 한도 1,000만원 내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가능) 3년 또는 5년(거치기간 1년 별도선택 가능)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신청) 서민 금융진흥원 App • (대출신청) 협약 은행 및 저축은행 의 창구 또는 App	금융 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어선의 소유자 (원양어선, 수산물·해상화물 운송 어선 제외)	●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톤 급별로 차등 지원 -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30톤 미만 63%, 50톤 미만 39%,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 지자체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 관할 수협 회원조 합 영업점 또는 Sh수협은행 방 문·문의 (☎1588-4119)	해양 수산부



2. 의료지원 💮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국가암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지원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분 10%(90% 공단부담) 지원	• 각 연도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선정 및 안내	보건 복지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40% 또는 60% 감경(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선정되어별도 신청없음.제외된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지사 신청	보건 복지부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자(필요시 만60세 미만 가능) (진단 감별검사) 선별검사상 인지저하(필요시 '정상' 결과인 자 가능)이면서, 만60세 이상(필 요시 만 60세 미만 가능)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선별검사) 전국 보건소 치 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실시 (진단검사) 전국 보건소 치 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실시 또는 협약병원 실시 및 검사 비 일부 지원 (감별검사) 협약병원 실시 및 검사비 및 검사비 일부 지원	•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 신청	보건 복지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안 심센터(보건소)에 등록된 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월 3 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항목(상급병실입원료) 등 제외	•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 신청	보건 복지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 7억원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의 80% * 단, 특실이용료, 보장구,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의 의료 비, 미용·성형 등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보건 복지부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한보고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중위소득 58%이하)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부양자: 24시간 상해 후유 장해, 질병 후유장해 아동: 상해·질병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암 진단비, 수 술위로금,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식중독 입 원 일당, 폭력피해 위로금 	• 아동보험 보험금 접수센터 - 전화: 02- 3471-5116 - 팩스: 070- 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 co.kr - 카카오톡채널: 서금원 한부모 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금융 위원회





3. 주거·돌봄지원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국민임대 주택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주택 공급	• 지역별 해당주택 분양 시 공급기 준에 맞춰 신청	국토 교통부
기존주택 전세 임대·융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자산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 인(자산기준 충족)	•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사업시행자 (LH·지방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 전용 85m2이하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국토 교통부
다가구 매입 임대 출·융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자산기준 충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국토 교통부
영구임대 주택공급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사업승인)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국토 교통부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	• (우선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전용 60㎡ 이하) * 해당기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주택을 최장 20년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 입주대상자 선정 시 해당기관으로 신청	국토 교통부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 중위소득 이하의 실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관할 지자체 (시·군·구)를 통해 신청	보건 복지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지원 가능)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 만원)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국토 교통부
어촌생활 돌봄지원	어업인 가구 중 임신부·출산3개 월이내·중위소득50%이하 어촌지역 거주자 중 만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 위소득 50%이하, 다문화·조손· 장애인가구 및읍면지역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 1일 2시간 이상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등 가사 서비스 제공, 다문화 및 65세이상 가구의 말벗 활동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 지역 수협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해양 수산부
가족희망 드림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조손가족 및 청소년부모 가족 사고·재난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	 심층 사례관리 및 상담, 자녀 학습·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사고·재난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 대상 심리상담, 생활도움 등 긴급 위기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 or.kr)	여성 가족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구입비용 지원 일반대상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차상 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 접수기간 중 관할 시·군·구 접수처또는인터넷 (www.at4u. 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상담전화 (☎ 1588-2670)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중앙부처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발 간 일 | 2023년 3월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디 자 인 | (주)어진기획

제 작 I 세종 (044)414-9700 서울 (02)2263-9700